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516
----------	------

발의연월일 : 2017. 6. 22.

발의자 : 김광수 · 김중로 · 황주홍  
최도자 · 이동섭 · 박주현  
천정배 · 김삼화 · 김관영  
유성엽 · 김종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때에는 공장 심사와 제품 성능검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연구원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연구원이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거부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연구원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연구원에 성능인증의 신청이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생 략)</p> <p>②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4.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인증 업무를 <u>거부한</u> 경우</p> <p>③ · ④ (생 략)</p>	<p>제17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거부하거나 지연한</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